



제422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치료 비용 지원 범위 확대 >

■ 진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07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치료 비용 지원 범위 확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진중오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2. 17.
3. 회부연월일: 2025. 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이초 사건 이후 최근 대전사건까지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미비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치료 비용 지원 범위 확대

개정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 비용’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생략)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제2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 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 지원</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 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 ·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동 사업은 2023년 「교원지위법」 개정²⁾으로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지원내용을 구체화한 「교원 보호공제 표준약관」이 마련되었음.

2024년 기준³⁾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청 관내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피해를 보상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임.⁴⁾

1)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 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 · 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 · 상담 · 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원지위법」(법률 제19735호) 2023. 9. 27. 개정, 2024. 3. 28. 시행

3) 2025년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은 개정 진행 중

4)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 중 I.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등 각종 피해 보상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공제자: 교육청 관내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등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 중 I. 보통약관 - 제2조제1호라목)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육활동 침해 여지 사안 포함)⁵⁾로 「교원지위법」 등에 따라 보호조치⁶⁾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이 지급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활력이 고갈 상태에 이른 교원(소진교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이 지급됨.⁷⁾

5)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6)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7)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 중 II. 특별약관 - 3. 상해치료비·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지위법 및 위임법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교육활동 침해여지 사안 포함) 이와 관련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과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진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규정된 행위

* 소진교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활력이 고갈 상태에 이른 교원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 중 I. 보통약관 - 제2조제1호차목 및 카목)

[표 1]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 주요 내용

구분	보상내용	공제금 지급한도	미보상 사유
배상책임	•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민사상 합의금 포함)	• 1사고당 2억원 •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 타법에 따른 공제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 비용(소제기 포함)	• 심급별 660만원 •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 민사: 고의·중과실 인정 • 형사: 유죄확정
상해치료비 심리상담비	• 치료 및 요양비 • 심리상담비	• 치료·요양비: 1사고당 200만원 • 심리상담: 15회	• 동일사유로 보호조치 지원을 받은 경우
재산상 피해비용	• 휴대폰 훼손 등 비용	• 1사고당 100만원	-
위협대처 서비스	•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시 긴급 경호	• 1사고당 20일	-
분쟁조정 서비스	•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 한도 없음	• 교원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무관한 분쟁

주: 2024년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 기준

자료: 교육부

이와 같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호조치를 받은 교원뿐만 아니라 장기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교원에 대해서도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해야 하므로, 그 외의 경우에 정신적 치료 비용을 지원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 비용에 대해서도 교원보호 공제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외의 경우에도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경우,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해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 지원’으로 규정하여 보상대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보상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2025.1.7.)된 바 있으므로,⁸⁾ 이에 따라 실시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8)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396호)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189